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박춘희 의원)

의안 번호	254
----------	-----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2일

발 의 자 박춘희 의원

찬 성 자 심현정, 김광성, 남진삼의원

1. 제안이유

우리군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 및 보호자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실시(안 제6조)

다.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사업 실시(안 제7조)

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2024. 3. 14. ~ 2024. 4. 3.(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4. 2. 29.~ 2024. 3. 12. 아래표 참조.

원안(의회)	수정안(인재육성과)	검토 결과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 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u>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 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u>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u> 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용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인터넷·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써 청소년의 성적·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야기 또는 부추기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5.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을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소년들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
3. 관계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군수는 청소년들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터넷·스마트폰 예절 교육
2. 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3.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4.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5.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
6.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
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
8.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상담 및 치유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시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하여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7조(사업) 군수는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추진을 위한 평창군 자체 전담 인력 및 사업비 확보 필요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대상 : 청소년 및 보호자
- 사업내용 : (인건비)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 인력 1명 (사업비)상담, 검사, 교육, 캠프 운영 등

나. 추계 결과

- 연간사업비 : 연72,199천원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합 계	72,199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전담인력	
기본금 (2호봉) 2,209천원 x 12월	26,508
명절수당 2,209천원 x 60% x 2회	2,651
제수당 360천원 x 12월	4,320
퇴직적립금 279천원 x 12월	3,348
4대보험료 281천원 x 12월	3,372
사업비	32,000
예절 교육(교재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500
문해력 교육(교재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500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교재 제작 및 소모품 구입 등)	500
상담·치유 지원(소모품 구입 등)	500
과의존 치유 캠프(2박 3일 x 2회)	30,000

다. 채용조달 방안

- 평창군 자체수입으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장 여 정 은
연락처	(033) 330 - 20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72,199	72,199	72,199	72,199	72,199	360,995
지방세수입		72,199	72,199	72,199	72,199	72,199	360,995
세 출		72,199	72,199	72,199	72,199	72,199	360,995
인터넷·스마트폰 지원 위탁사업비(307-05)		72,199	72,199	72,199	72,199	72,199	360,995
재원 조달		72,199	72,199	72,199	72,199	72,199	360,995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72,199	72,199	72,199	72,199	72,199	360,995
	지방세	72,199	72,199	72,199	72,199	72,199	360,99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